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5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3. 제안이유

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활용

나. 정보화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조정 등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 수용

4. 주요골자

가. 정보화책임관 용어 정의 및 설치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의 4호, 제9조의2)

나.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5조제2항)

○ 매년 2월말까지 ⇒ 매년 11월말까지

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원 변경(안 제7조)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지역정보화협의회

○ 협의회장을 행정부지사 ⇒ 도지사

○ 회원중 부시장·부군수 ⇒ 시장·군수

라.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위탁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

마.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칙 위임조항 신설(안 제33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을 뒷받침하고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시기와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등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던 “정보화 책임관”의 설치근거, 임명, 임무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안 제2조의4호,제9조의2)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2월말에서 매년 11월말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회원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로 강화하였으며(안 제7조)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과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안제33조)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